



당신이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외국인등록이나 국민건강보험,인감등록 등 시구청촌 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속방법과 그것들을 취급하는 일본의 사무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시구청촌 사무소

당신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에 필요한 다양한 수속을 행하는 곳이 시구청촌 사무소입니다.

(1) 시구청촌 사무소의 역할

당신이 살고 있는 시구청촌에 있는 사무소는 각종 신고나 수속을 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상담창구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마음편히 상담합니다.

시구청촌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초중학교의 편입학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2) 휴일·야간창구

시구청촌에 따라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동교부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전화나 메일로의 수속문의 등에 휴일이나 야간이라도 답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 호적

호적제도란 개인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일본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일본국내에서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또는 결혼이나 이혼했을 때 등은 호적법에 의거하여 주거지가 있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이들 신고서는 보관되어, 그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출생이나 사망이 있을 때는 동시에 본국에도 보고합니다. 수속방법은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3 귀화

귀화와 영주허가의 큰 차이는 귀화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외국적의 사람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이 필요하고,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며,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일본인의 양자가 되거나 해서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귀화신청은 각 지방법무국에 합니다. 허가되면 재류자격은 없어지며, 일본의 호적으로 들어가 주민등록이나 선거권 등의 권리를 얻어 일본인으로서의 납세, 근로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가까운 지방법무국에 문의합니다. 수수료:유료



4 사망 신고

외국인이더라도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는 일본인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을 때에도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일본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법에 의거하여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냅니다.

사망신고 외에 돌아가신 분의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반납하고, 외국인등록도 말살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국적국에도 수속을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수속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확인을 합니다.

또한 일본인의 남편 또는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 재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인 사람은 재류기간도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해서 살고자 할 때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합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처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수료
1. 사망신고서 시구정촌의 사무소, 또는 병원에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의 사망진단서란에 의사의 증명을 받은 것 3. 신고인의 인감 인감이 없는 사람은 사인이라도 괜찮음	신고인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사망지의 시구정촌의 사무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무료

다언어생활정보



D 그 외의 신고

▶ D 그 외의 신고 의 TOP 으로

샘플

死亡届

平成 年 月 日届出

長 殿

受理 平成 年 月 日 第 号	発送 平成 年 月 日					
送付 平成 年 月 日 第 号	長印					
書類調査	戸籍記載	記載調査	調査票	印章	住民票	通知

(1) (よみかた)	氏 名	
(2) 氏 名	姓	名 <input type="checkbox"/> 男 <input type="checkbox"/> 女
(3) 生 年 月 日	明治 昭和 大正 平成 年 月 日	(生まれた日から30日以内) 死亡したときは生まれた 時刻も書いてください) <input type="checkbox"/> 午前 時 分 <input type="checkbox"/> 午後 時 分
(4) 死亡したとき	平成 年 月 日	<input type="checkbox"/> 午前 時 分 <input type="checkbox"/> 午後 時 分
(5) 死亡したところ	番地 番 号	
(6) 住 所 (住民登録をして いるところ)	番地 番 号	
(7) 本 籍 (外国人のときは 国籍だけを書いて ください)	番地 番 号	
(8) 死亡した人の夫 または妻	<input type="checkbox"/> いる (満 歳) <input type="checkbox"/> いない (<input type="checkbox"/> 未婚 <input type="checkbox"/> 死別 <input type="checkbox"/> 離別)	
(9) 死亡したときの 世帯のおもな 仕事と	<input type="checkbox"/> 1. 農業だけまたは農業とその他の仕事を持っている世帯 <input type="checkbox"/> 2. 自由業・商工業・サービス業等を個人で経営している世帯 <input type="checkbox"/> 3. 企業・個人商店等(官公庁は除く)の常用勤労者世帯で勤め先の従業員数が1人から99人までの世帯(日々または1年未満の契約の雇用者は5) <input type="checkbox"/> 4. 3にあてはまらない常用勤労者世帯及び会社団体の役員の世界帯(日々または1年未満の契約の雇用者は5) <input type="checkbox"/> 5. 1から4にあてはまらないその他の仕事をしている者のいる世帯 <input type="checkbox"/> 6. 仕事をしている者のいない世帯	
(10) 死亡した人の 職業・産業	(国勢調査の年一平成 年 月 1日から翌年3月31日までに届出をするときだけ書いてください) 職業 産業	
(11) その他		
届 出 人	<input type="checkbox"/> 1. 同居の親族 <input type="checkbox"/> 2. 同居していない親族 <input type="checkbox"/> 3. 同居者 <input type="checkbox"/> 4. 家主 <input type="checkbox"/> 5. 地主 <input type="checkbox"/> 6. 家屋管理人 <input type="checkbox"/> 7. 土地管理人 <input type="checkbox"/> 8. 公設所の長 住所 番地 番 号 本籍 番地 番 号 筆頭者の氏名 署名 印 年 月 日生	
事件簿番号		
連絡先	電話 - - 昼間連絡が取れるところ 自宅・勤務先・携帯	

記入の注意

鉛筆や消えやすいインキで書かないでください。

死亡し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かぞえて7日以内に出してください。

届書は、1通でさしつかえありません。

「筆頭者の氏名」には、戸籍のはじめに記載されている人の氏名を書いてください。

内縁のものはふくまれません。

には、あてはまるものに☑のようにしるしをつけてください。

死亡者について書いてください。

届け出られた事項は、人口動態調査(統計法に基づく指定統計第5号、厚生労働省所管)にも用いられます。

◎届出人の印をご持参ください。

字は略さず丁寧に書いてください。



다언어생활정보



D 그 외의 신고

▶ D 그 외의 신고 의 TOP 으로

샘플

死亡診断書 (死体検案書)

この死亡診断書(死体検案書)は、我が国の死因統計作成の資料としても用いられます。かき書で、できるだけ詳しく書いてください。

記入の注意

氏名	1 男	2 女	生年月日	明治 昭和 大正 平成	年 月 日	午前・午後 時 分	
	(生まれたから30日以内に死亡したときは生まれた時刻も書いてください。)						
死亡したとき	平成	年	月	日	午前・午後	時 分	
(12) 死亡したところ及びその種別	死亡したところの種別	1 病院 2 診療所 3 介護老人保健施設 4 助産所 5 老人ホーム 6 自宅 7 その他					
	死亡したところ	番地 番 号					
	死亡したところの種別・診療施設の名称						
(14) 死亡の原因	Ⅰ	(ア) 直接死因	発病(発症) 又は受傷から死亡までの期間				
	Ⅱ	(イ) (ア)の原因	◆年・月・日等の単位で書いてください。ただし、1日未満の場合は、時・分等の単位で書いてください。(例)1年3か月、5時間20分)				
		(ウ) (イ)の原因					
		(エ) (イ)の原因					
	Ⅲ	直接には死因に関係しないが1層の病状経過に影響を及ぼした傷病等					
手術	1 無 2 有	部位及び主要所見			手術年月日	平成 年 月 日	
解剖	1 無 2 有	主要所見					
(15) 死因の種類	1 病死及び自然死 2 交通事故 3 転倒・転落 4 溺水 5 煙、火災及び火焔による傷害						
	外因死 不慮の外因死 6 窒息 7 中毒 8 その他 その他及び不詳の外因死 9 自殺 10 他殺 11 その他及び不詳の外因 12 不詳の死						
(16) 外因死の追加事項	傷害が発生したとき	平成・昭和 年 月 日 午前・午後 時 分	傷害が発生したところ	市 区 町 村	都道府県		
	傷害が発生したところの種別	1 住所 2 工場及び建築現場 3 道路 4 その他					
◆伝聞又は鑑定情報の場合でも書いてください	手段及び状況						
(17) 生後1年未満で病死した場合の追加事項	出生時体重	グラム	単胎・多胎の別	1 単胎 2 多胎 (子中第 子)	妊娠週数 満 週		
	妊娠・分娩時における母体の病態又は異状	母の生年月日		前問までの妊娠の結果			
(18) その他特に付言すべきことから	1 無 2 有	3 不詳	昭和 平成 年 月 日	出生児 人 死産児 人 (妊娠満22週以後に限る)			
(19) 上記のとおり診断(検案)する	診断(検案)年月日 平成 年 月 日			本診断書(検案書)発行年月日 平成 年 月 日			
	(病院、診療所若しくは介護老人保健施設等の名称及び所在地又は医師の住所)			番地 番 号			
(氏名)	医師			印			

生年月日が不詳の場合は、指定年齢をカッコを付して書いてください。

夜の12時は「午前0時」、昼の12時は「午後0時」と書いてください。

「老人ホーム」は、養護老人ホーム、特別養護老人ホーム、軽費老人ホーム及び有料老人ホームをいいます。

傷病名等は、日本語で書いてください。1層では、各傷病について発病の方(例:急性)、病因(例:病原性)、部位(例:胃噴門部がん)、性状(例:病理組織型)等もできるだけ書いてください。

妊娠中の死亡の場合は「妊娠週何週」、また、分娩中の死亡の場合は「妊娠週何週の分娩中」と書いてください。

産後42日未満の死亡の場合は「妊娠週何週産後何週」と書いてください。

1層及び2層に關した手術について、術式又はその診断名と関連のある所見等を書いてください。紹介状や伝聞等による情報についてもカッコを付して書いてください。

「2交通事故」は、事故発生前からの期間にかかわらず、その事故による死亡が該当します。「5煙、火災及び火焔による傷害」は、火災による一般化炭素中毒、窒息等6含まれます。

「1住所」とは、住宅、邸等をいい、老人ホーム等の居住施設は含まれません。

傷害がどういふ状況で起こったかを具体的に書いてください。

妊娠週数は、最終月経、基礎体温、超音波計測等により算出し、できるだけ正確に書いてください。

母子健康手帳等を参考に書いて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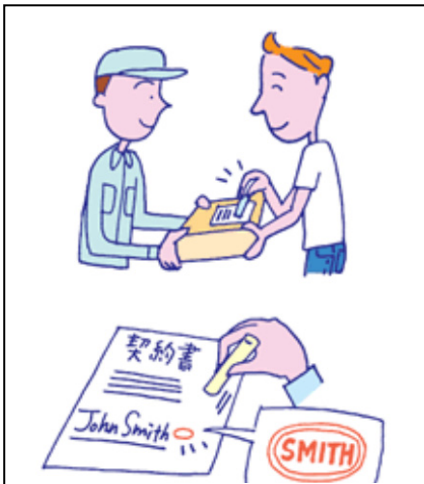
5 인감

일본에서 사인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5-1 인감이란

인감에는 평소 자주 쓰는 「약식 도장」과 중요한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 도장」이 있습니다. 모두 「도장 가게」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재료 등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1)약식 도장



관공서에 신청서나 택배의 소포를 수취할 때에 사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소형 인감입니다. 특히 규정은 없습니다만, 은행구좌를 개설할 때에 사용한 인감(은행인감)은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할 때나 구좌를 폐지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2)인감 도장

인감 도장은 공적인 중요문서에 날인(도장을 찍는 것)할 때의 인감을 말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사무소에 인영(날인한 것)을 등록(인감등록)합니다.



5 인감

5-2 인감등록

인감등록은 시구정촌의 고유한 사무이며, 그 취급은 각 시구정촌의 인감 조례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시구정촌에 있어서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한 사람에 한 개에 한합니다. 인감등록 수속이 종료되면 인감등록증(인감등록카드)이 발행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등록증은 자동차등록이나 부동산의 등기, 금전의 입차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것으로 사인 대신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들 관리에는 충분히 주의합니다.

※인감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분실신고를 제출함과 동시에 새로 인감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수속에는 며칠 걸립니다.

●인감등록의 신청(만 15 세 이상의 본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제출처	언제	수수료
1. 등록할 인감 2.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얼굴사진이 붙은 본인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증명서 • 운전면허증 등	시구정촌의 사무소	신청당일	등록:무료 증명서의 발행:유료(300 엔 정도,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인감등록증(표면)





(1) 등록할 수 있는 문자

●한자로 된 이름을 사용하여 외국인등록하고 있는 경우

- (a) 한자에 의한 성·이름의 인감
- (b) 한자에 의한 성만의 인감
- (c) 한자에 의한 이름만의 인감

●알파벳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중 하나로 만들어진 인감

●통칭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등록하고 있는 통칭명 대로 만들어진 인감

※닉네임이나 이니셜 등에 의한 인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통칭명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본명과는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외국분은 1 개만 통칭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로 통칭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는 가타카나로 만들어진 인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인감등록을 할 수 없는 인감

등록하는 인감에는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나 성, 미들네임 이외로 표시되어 있는 것
- 직업, 상표 그 외, 성명 이외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 고무인 등 변형되기 쉬운 재질의 것
- 인영의 크기에 있어서 한 변의 길이가 8 밀리미터에서 25 밀리미터의 정방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인영이 불선명한 것(판독되지 않는 것, 일부가 빠진 것)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인감)을 사용할 때 그 인감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본에서는 토지나 집, 자가용을 살 때와 같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 인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등록증(인감등록카드)을 관공서의 창구에 제시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라도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등록된 인감만으로는 인감증명서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관공서에 따라서는 자동교부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